
승마용말 등록규정

제 1 장 총 칙 810-3

- 제 1 조 목 적
- 제 2 조 정 의
- 제 3 조 적용범위

제 2 장 등 록 810-3

- 제 4 조 등록대상
- 제 5 조 등록의 구분
- 제 6 조 등록신청자
- 제 7 조 등록제한
- 제 8 조 등록의 거절·취소
- 제 9 조 기초등록으로의 전환
- 제10조 등록사항
- 제11조 등록사항의 공시
- 제1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3조 유전자 감정
- 제14조 마명의 부여
- 제15조 마명의 제한

제 3 장 기초등록 810-5

- 제16조 기초등록 대상마
- 제17조 등록신청서류 등
- 제18조 등록심사

제 4 장 혈통등록 810-5

- 제19조 혈통등록 대상마
- 제20조 등록신청서류 등
- 제21조 등록심사

제 5 장 번식등록 810-6

- 제22조 번식등록 대상마
- 제23조 등록신청서류 등
- 제24조 등록심사

제 6 장 번식성적 관리 810-6

- 제25조 교배증명서 등의 교부
- 제26조 교배 및 번식성적 신고

제 7 장 정액 등의 혈통확인 810-6

- 제27조 혈통확인 신청대상
- 제28조 혈통확인 신청서류 등
- 제29조 혈통확인 증명서의 발급

제 8 장 보 칙 810-7

- 제30조 우수 승마용말의 선발 등
- 제31조 증명서 발급
- 제32조 패스포트 발급 등
- 제33조 수수료
- 제34조 등록증명서의 이용 등
- 제35조 시행세칙
- 제36조 변경내용의 공고

부 칙 810-8

승마용말등록규정

제 정 2009. 7.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마용 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용 말의 혈통과 개체식별을 명확히 하고 개량증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용 말”이란 사람이 기승(騎乘)하여 레저용이나 승마대회용으로 사용하는 말을 말한다.
2. “등록”이란 말의 혈통보존과 개량증식을 위하여 말의 선후대의 적(籍), 가계계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공부(公簿)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3. “기초등록”이란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4. “혈통등록”이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품종,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5. “번식등록”이란 번식용 말의 개체식별 사항, 혈통, 품종, 소유자, 번식 및 생산성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6. “개체식별”이란 말의 모색(毛色) 및 특징검사, 유전자(DNA)감정(이하 “유전자감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그 말을 명확히 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외국등록기관”이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외국의 말 등록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포입말”이란 수태된 상태로 어미말 함께

수입되어 국내에서 출생한 망아지를 말한다.

9. “가축인공수정사”란 「축산법」 제12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10. “정액등처리업자”란 「축산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정액등수입업자”란 가축인공수정용 정액·난자·수정란(이하 “정액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승마용 말의 등록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등 록

제4조(등록대상) 승마용 말은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더러브렛종) 등록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의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된 말은 제외한다.

제5조(등록의 구분) 등록은 “기초등록”, “혈통등록” 및 “번식등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의 기록 등을 포함한다.

제6조(등록신청자) ①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말의 소유자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2명 이상의 공동소유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대표자 1명이 신청인이 되며, 그 명칭 및 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등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할 수 없다.

1. 혈통등록에서 유전자 감정이나 모색유전의 법칙에 따른 친자관계에 이상이 있는 말

2. 번식등록에서 거세말

3. 그 밖에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말

제8조(등록의 거절·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근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③ 제12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말의 소유자는 해당말을 재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마사회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다른 말에 대한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9조(기초등록으로의 전환) 혈통등록된 말의 선대 혈통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말의 혈통등록을 기초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사항) ① 등록사항은 해당말의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마명, 성별, 모색(毛色), 생산연월일, 특징, 가계(家系), 품종, 생산지, 생산자, 소유자의 성명(법인·단체 등일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번식등록된 말의 번식성적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관리는 전자적 파일로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사항의 공시) ① 등록 말의 등록사항은 등록명부, 그 밖의 공시물에 올린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정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물에 올린다.

제1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마사회에 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매·교환·증여·상속 등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2. 사망(폐사·도살·살처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수수료를 마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유전자 감정) ① 혈통등록을 신청한 말과 기초등록을 신청한 말의 자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하여는 유전자 감정을 시행한다.

1. 부모마의 모색과 비교시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2. 한 발정기간에 2두 이상의 수말과 교배해 태어난 경우

3.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경우

4. 출생한 해를 지나서 등록을 신청한 경우

5. 망아지의 부마가 번식등록되지 않은 수말인 경우

6. 그 밖에 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유전자 감정은 심사원이 해당말의 모근을 채취하고 마사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시행한다.

③ 유전자 감정에 불구하고 친자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재검사 횟수는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유전자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비용은 마사회가 부담한다.

제14조(마명의 부여) ① 말의 마명은 한글로 여백없이 10자 이내로 한다.

② 마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등록 또는 혈통등록 신청서에 희망하는 마명을 기재하거나 마명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말의 마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마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마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명은 부여할 수 없다.

- 1.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마명
- 2. 부모마 또는 조부모마의 마명과 같은 마명
- 3.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마명
- 4. 숫자만인 마명
- 5. 그 밖에 마명으로 부적당한 마명

② 제1항 제5호의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마사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기초등록

제16조(기초등록 대상마) 기초등록 대상 말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승마용 말(활용예정인 말을 포함한다)로서 제19조에 따른 혈통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말로 한다.

제17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기초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 2. 국내에서 출생한 자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가. 교배증명서
 - 나. 인공수정증명서(「축산법」 제18조에 따른 수정증명서) 또는 포입말의 경우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말의 생산과 관계된 서류
 - 다. 수정란이식증명서(「축산법」 제18조에 따른 수정란이식증명서) 또는 포입말의 경우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말의 생산과 관계된 서류

② 출생자마의 등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출생자마가 1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사의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마사회는 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추가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심사) 기초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체식별확인서의 작성
- 2. 마이크로칩 주입
- 3. 부모마의 확인 및 모색유전 법칙에 따른 친자확인 심사(출생자마에 한함)
- 4. 제13조에 따른 친자확인 심사(출생자마에 한함)
- 5.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제4장 혈통등록

제19조(혈통등록 대상마) 혈통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산마
 - 가. 이 규정에 따라 번식등록된 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
 - 나. 포입말로 외국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품종의 말로서 이 규정에 따라 번식등록된 씨암말의 자마
 - 다.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말 중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말
- 2. 수입말
 - 가. 외국등록기관에 등록된 3대 이상의 선조혈통이 인정되는 말

제20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혈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내산마
 - 가. 씨암말보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 나. 교배증명서,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이식증명서
- 2. 포입말
 - 가. 씨암말보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 나. 모마의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

록기관이 발행한 해당 생산망아지와 관계된 교배 및 부마의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말

가. 등록신청서

나. 해당말의 혈통을 증명하는 출생국 또는 수출국의 외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혈통등록 신청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말이 1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사의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마사회는 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심사) 혈통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체식별확인서의 작성
2. 부모마의 확인 및 모색유전의 법칙에 따른 친자확인
3. 마이크로칩 확인 및 주입
4. 제13조에 따른 친자확인
5.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제5장 번식등록

제22조(번식등록 대상마) 번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말은 이 규정에 따라 혈통등록된 말로 한다.

제23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번식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번식등록신청서, 제33조에서 정한 수수료 및 사진(마체의 전면 및 좌우 측면에서 두부와 사진반점을 뚜렷하게 촬영한 전신 천연색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번식등록을 하려는 말이 수입말인 경우에는 수입말용 번식등록신청서와 제33조에서 정한 수수료, 사진 및 혈통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번식등록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말 : 번식활동을 시작하기 전
2. 암말 : 자마가 출생되기 전

④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등록심사) 번식등록을 위한 심사원의 등록심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체식별확인서에 의한 심사
2. 마이크로칩 확인
3. 그 밖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업무

제6장 번식성적 관리

제25조(교배증명서 등의 교부) ① 번식등록된 씨수말이 자연교배를 한 경우 해당말의 소유자는 암말의 소유자에게 교배한 암말에 관한 사항, 최초 및 최종 교배연월일, 암말이 개체식별문서와 대조확인 되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교배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축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실시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정액(난자)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 및 이식증명서』를 씨암말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번식등록된 씨수말 소유자가 소유한 암말과 자가교배한 경우라도 교배증명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자가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씨수말보고서에 작성하여 마사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배 및 번식성적 신고) 번식등록된 말의 소유자는 소유한 말의 교배 또는 번식활동의 결과를 씨수말보고서 및 씨암말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액 등의 혈통확인

제27조(혈통확인 신청대상) ① 정액등처리업자 및 정액등수입업자가 말의 정액 등을 생산에 활용하려 할 때에는 마사회에 해당 정액 등의 혈통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혈통확인의 대상이 되는 정액 등은 번식등록된 씨수말과 씨암말에

서 채취된 것과 수입된 것에 한한다.

제28조(혈통확인 신청서류 등) ① 정액 등의 혈통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정액 등을 채취·처리한 경우
 - 가. 혈통확인신청서
 - 나. 정액 또는 난자의 채취처리를 위한 말의 번식등록증명서
 - 다. 유전자 감정을 위한 DNA 샘플

2. 정액 등을 수입한 경우
 - 가. 혈통확인신청서
 - 나. 수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수출국 해당등록기관이 발행한 해당말의 혈통 증명서류와 DNA 유전자형
 - 다. 유전자 감정을 위한 DNA 샘플

② 마사회는 혈통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추가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혈통확인 증명서의 발급) ① 제28조에 따라 정액 등에 대한 혈통 확인이 신청되면 마사회는 그 내역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1. 정액 및 난자를 채취·처리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인공수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수정란을 처리·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수정란증명서 및 이식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통확인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0조(우수 승마용말의 선발 등) ① 마사회는 선발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한 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급별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마사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증명서 발급) ① 마사회는 등록을 마친 때에는 등록증명서를 해당말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② 등록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오염·훼손

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사회는 재발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발급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할 때에는 제33조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마사회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제32조(패스포트 발급 등) ① 등록된 말을 수출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말의 개체식별 등을 위한 패스포트(Passport)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패스포트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패스포트 발급신청서
2. 제31조 따라 발급된 해당말의 등록증명서
3. 교배증명서, 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이식증명서(임신한 씨암말에 한한다)

③ 마사회는 패스포트의 정확한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말에 대한 별도의 개체식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 감정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등록증명서의 이용 등) ① 등록된 말을 이동하거나 교배 또는 거래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말 소유자는 등록증명서로 그 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말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소유자는 변경 전 소유자가 서명한 해당말의 개체식별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변경내용의 공고) 이 규정의 개정내용은 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3조에 의한 수수료 징수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 수 료(제33조 관련)

구분		세부구분	수수료
기초등록		-	10,000원
기초등록 (출생자마)		출생후 60일 이내	10,000원
		출생후 61일 이후~ 12개월령까지	30,000원
		13개월령 이후	100,000원
혈통등록		출생후 60일 이내 (검역종료후 60일이내)	10,000원
		출생후 61일 이후~12개월령까지 (검역종료후 61일이후)	30,000원
		13개월령 이후	100,000원
번식등록		씨수말	100,000원
		씨암말	20,000원
혈통확인	정액/난자 /수정란	국내산, 수입산	최초 10,000원
		수정란의 채란 30일 이후	최초 30,000원
	증명서	증명서 발급전당	1,000원
마명변경		-	50,000원
변동사항신고		30일이내	-
		31일이후	20,000원
증명서교부		-	-
증명서재교부		-	100,000원
씨수말보고서 및 씨암말보고서		교배해 11월 30일까지	-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0,000원
씨암말보고서		매년 11월 30일까지	-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0,000원
유전자감정료		기초등록, 혈통등록, 번식등록, 혈통확인	90,000원